

# 구술사 연구와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

## Oral History Research and Human Subject Research on Bioethics and Safety Law

이 호 신 (Hosin Lee)\*\*

### 목 차

- |                         |                       |
|-------------------------|-----------------------|
| 1. 여는 말                 | 4. 구술자 보호를 위한 구술사의 윤리 |
| 2. 생명윤리법의 주요 내용         | 5. 대응방안과 제언           |
| 3. 「생명윤리법」의 구술사 연구에의 적용 | 6. 닫는 말               |

### <초 록>

구술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자체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연구와 자료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 대상으로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가 학문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구술사, 구술자료,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질적 연구

### <ABSTRACT>

Oral history research is carried out through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 living person. The data collected from an oral history project is not a mere fact or a mass of information but accounts of persons who reveal their own personalities. For this reason, oral history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and the use of such data must be based on rigorous ethical standards. The Bioethics and Safety Law shares a similar view on human subject research,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ncludes human subject research as a subject of review and management. However, the Bioethics and Safety Law's protection of personalities and human rights focuses on life sciences methodologies, which are not suitable for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an oral history of a value oriented and critical approach to human beings. This study examines the detail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Law related to human subject research an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is law is applied to sub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uch as oral history. Through this study, alternative methodologies, which can be used for oral history research, while maintaining academic autonomy, are suggested.

Keywords: oral history, oral history resource, Bioethics and Safety Law, Institutional Review Boards, qualitative research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교수(leehs@hansung.ac.kr)

■ 접수일: 2017년 4월 27일 ■ 최초심사일: 2017년 8월 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7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1-21,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3.001>>

## 1. 여는 말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 속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과 정보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구술자의 인생과 세상에 대한 고유한 해석이 담겨 있다. 다른 사람에게 쉽사리 보여주기 어려운 삶의 내밀한 속살이 담겨 있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감출 수 없는 깊은 시선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 이야기들은 그저 단순한 정보나 자료의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다. 어찌 보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자체이고, 개성이 온전하게 표현된 인격 자체이기도 하다.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은 구술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구술사 연구기관과 아카이브즈(이하 '구술사 수행기관'이라 한다)들이 구술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고유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의 모든 과정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온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구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의 구술사 수행기관들은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구술사네트워크와 같은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렇지만 구술사 수행기관들의 이러한 자율적인 노력들은 최근 들어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근래 들어 급격하게 강화된 우리 사회의 인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준과 규범들은 구술사 수행기관들이 오랜 동안 유지해 온 자체 규범을 무력화시키면서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보편적인 기준과 규범을 통해서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구술사와 구술자료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이런 기준과 규범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과 규범의 출현을 환영하고 적극 수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준과 규범이 구술자료가 가지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준과 규범들이 구술사 수행을 위한 적절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수행과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역할 할 수 있음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107호, 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38호,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 제시하는 몇몇 규범들은 근래 들어 구술사 연구의 수행과 자료 활용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호신(2017)은 「개인정보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술사 연구에 작용하는 위협을 개관하면서,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호의 신속한 개정과 자체 윤리 지침의 보완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Christian Joon Park(2016)은 2013년 2월에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라 한다)의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술사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들은 IRB의 사전심의 및 규제 대상에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Christian Joon Park은 구술사를 포함한 질적 연구는 비판적 학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IRB의 심의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주장하면서, 미국

구술사학회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응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생명윤리법」의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구술사에 위협이 되는 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생략한 채 논의가 이루어진 까닭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내용 가운데 구술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법의 무분별한 적용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술사 연구와 구술자료의 수집이 그 고유한 특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먼저 「생명윤리법」의 관련 조항의 주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구술자료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구술사 수행기관들이 마련하고 있는 연구윤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윤리법」과 구술사 연구의 접점을 찾아서 구술사 연구와 자료의 수집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 2. 생명윤리법의 주요 내용

### 2.1 생명윤리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생명윤리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생명윤리법 제1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과 인간유래물 연구의 과정, 그리고 배아나 유전자의 취급 과정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으로 「생명윤리법」(법률 제7150호)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 영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인간의 배아, 세포, 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 활용하는 과학과 기술(구법 제2조 제1호)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던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를 적용 범위에 포함한 것은 2012년 2월에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법」(법률 제11250호)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과 이것으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의 인체유래물(법 제2조 제11호)이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실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회과학 연구나 인문학 연구도 「생명윤리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2.2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

「생명윤리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

와 배아나 유전자 연구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생물학이나 의학과 같이 생명과학 분야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비단 생명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이끌어내는 인간대상연구에도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생명과학이라는 제한된 영역에만 적용되던 것이 그 영역을 확대하여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연구 가운데 사람을 직접 상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고 정의한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19호)은 인간대상연구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이다. 둘째,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의 행동 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이다. 셋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피험자보호법(45CFR46, Protection of Human Subject)’의 규율 대상인 중재(intervention)연

구, 상호작용(interaction)연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한 연구를 그대로 차용한 것(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p. 102)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영역은 의학을 비롯한 전통적인 생명과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연구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영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둘째와 셋째 영역은 비단 생명과학 영역이 아닌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연구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연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생명윤리법」이 인간대상연구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나타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영역의 연구도 IRB의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윤리법」이 규정하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이 되면, 연구의 수행에 앞서서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의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법 제15조 제1항).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문·사회과학 연구가 IRB의 사전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 제2항은 인간대상연구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대상자와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IRB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법 제15

조 제2항에 근거해서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1>(출처: <http://www.law.go.kr>)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IRB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의 상세한 내역이다. 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먼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이미 연구대상자에 대해서 도서나 논문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사전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보호할 실익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연구이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면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이다. 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연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중재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구 가운데 연구대상자에게 약물 투여나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신체 변화가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접촉이나 측정, 관찰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맛이나 질에 대한 평가, 화장품의 사용감이나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는 IRB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규칙」은 중재연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외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환경에 대한 조작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연구는 제1호에 해당하기는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 제2호는 상호작용 연구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작용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특히 「개인정보법」 제23조가 제시하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을 심의 면제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민감정보에는 개

<표 1>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IRB 심의 면제 대상

<p>제1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li> <li>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li> <li>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li> <li>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li> </ul> </li> <li>2. 연구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들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li> <li>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li> </ol>
--

인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과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개인정보법』 제23조 제1항)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개인정보법 시행령』 제18조)들이 포함된다. 민감정보는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구분해서 민감정보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연구 가운데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IRB의 심의를 면할 수 없다.

IRB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를 확보하였는지의 여부, 연구대상자의 안전 여부,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심의와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생명윤리법』 제10조 제3항).

『생명윤리법』은 인간이나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IRB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IRB의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고, 심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IRB에 의한 심의는 국가기관에 의한 일률적인 통제가 아니라 일종의 자율적 규제의 도모를 절차화한 것(김은애, 2015, p. 46)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에서는 심의기구가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밖의 세세한 사항들은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연구

수행의 가능 여부와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관리를 IRB라는 자체 기구에 맡김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권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적 규범의 적용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IRB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생명윤리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단지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통상 심의는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를 연구자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조홍석, 2014, p. 492)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IRB는 단지 연구에 대하여 심의하여 승인하는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승인된 연구에 대한 수행을 중지시키거나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다(김은애, 2015, p. 45).

IRB의 심의는 제출된 연구계획이 연구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연구의 해악과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점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제출된 연구계획서가 연구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는 IRB의 중점적인 심의사항이다. 연구대상자의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앞서서 해당 시험, 치료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습득 이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연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

을 점검받도록 하는 것이다(박윤희, 이얼, 이평수, 2012, p. 37). 연구대상자에게 해당 실험의 성격,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의 윤리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타당성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연구 방법이 해당 결과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인가를 파악하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IRB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체적인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용 IRB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한편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절차와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법」에서는 서면, 구두, 홈페이지 클릭 등 동의의 의사 표시에 그 형식을 구별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생명윤리법」에서는 서면 동의로 그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식별정보까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생명윤리법」 제18조).

한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IRB의 심의용으로 제출한 연구계획서, 심의 결과, 연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연구결과가 포함된 연구 종료보고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감독·결과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서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3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나 기록 축적 등을 위해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IRB의 심의를 거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지금까지 「생명윤리법」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 영역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구술사 연구와 구술자료의 수집에 「생명윤리법」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3. 「생명윤리법」의 구술사 연구에의 적용

#### 3.1 구술사 인터뷰와 「생명윤리법」의 연구

구술사는 살아 있는 사람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을 소유한 구술자와 해당 영역을 연구하는 채록자의 만남을 통해서 구술사의 연구와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 구술사 연구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이 되어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또한 구술사 연구와 구술자료에서는 대체로 구술자의 신원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구술사 연구가 『생명윤리법』의 적용 영역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선부른 일이다. 이러한 판단은 구술사 연구가 『생명윤리법』이 제시하는 ‘연구(research)’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생명윤리법』에는 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제정 과정에서 주요한 모델로 참조한 미국의 ‘피험자보호법(45CFR46, Protection of Human Subject)’에서는 연구를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조사, 평가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탐구행위’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생명윤리학계는 ‘연구’에 대한 정의문제로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일반화(generalizable)’와 ‘지식(knowledge)’의 정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화’에 대한 의미 해석이 논쟁의 대상이다. 어디까지가 ‘일반화’이며, 어느 시점부터 ‘일반화’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나라는 것이다. 애초에 ‘일반화’할 수 없는 지식의 도출이나 그 주변에 대한 탐구는 ‘연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범주의 ‘활동(activity)’은 윤리적 심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미국의 법률제도는 정의를 내린다. 단순한 ‘호기심 연구’나, 한두 사례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발생하는 지식을 구하는 탐구활동은 미국의 법률적 해석으로는 ‘연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병인, 2014, p. 9). 실제로 이 부분은 구술사 연구에 IRB 심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었다. Linda Shopes(2007)에 따르면, 미국 연방임상연구안전국(OHRP,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은 2003년에 구술사 인터뷰는 법률이 정의하는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표명했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구술사는 IRB의 심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질적 연구의 일종인 구술사는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구술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한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윤택림, 함한희, 2006, p. 51). 구술사는 다른 사회과학 연구가 다루기 어려운 개인의 사적·주관적 경험을 드러나게 하고, 그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윤택림, 함한희, 2006, p. 53). 미국 관계 당국의 법 해석은 구술사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 적용 과정에서 미국처럼 관계 당국이 구술사를 IRB의 심의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우리 법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런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구술사 프로젝트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의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IRB의 심의 없이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나 국가기록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을 통해서 수행하는 구술사 프로젝트와 서울시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술사 프로젝트는 IRB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행하는 구술사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모두 인간대상연구에 해당이 될 수 있어 IRB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통상적인 교육 실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석사논문의 작성 과정 등은 IRB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도교수의 적절한 지도 아래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활용해서 또 다른 학술논문을 발표하거나 할 때에는 IRB의 심의가 필요하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석사논문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이 된다면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한국연구재단, 2016, p. 171).

### 3.2 IRB 사전 심의가 구술사 연구에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

구술사 연구가 인간대상연구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IRB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생명윤리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라면, IRB 심의가 면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IRB 심의가 면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고 있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르면, 구술사 연구는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기가 어렵다. 심의 면제의 기본 요건이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비밀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다른 질적 연구들과는 달리 구술사는 역사적인 사료로써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술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심지어 육성과 얼굴까지를 모두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살펴 볼 때, 구술사 인터뷰가 심의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술사 프로젝트의 경우를 제외한 여타 구술사 프로젝트들은 구술사 인터뷰의 수행에 앞서서 IRB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고,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관리와 감독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심의와 규제는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질적 연구의 일종인 구술사의 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면서 연구자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한 연구 수행을 방해하는 행정적 장애물(Neuenschwander, 2016, p. 554)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Christian Joon Park(2016)은 구술사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이며, 비판적 학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IRB의 심의 및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술사는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

적인 연구로, 상당 부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성격의 연구에 사전 심의라는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IRB의 사전 심의가 자칫하면 일종의 검열의 기제로 자리를 잡아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연구의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Hamburger(2004)는 IRB의 사전 심의가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검열로 자리를 잡아서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IRB 위원의 정치적인 성향과 다른 연구의 경우에 아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연구의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전심의를 학문적 주제와 방법의 선택에서의 연구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실행의 측면에서도 구술사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특히 구술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우리 법의 IRB 심의는 윤리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RB의 연구방법에 대한 시시콜콜한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대한 온당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IRB가 연구 계획과 실행의 단계에서 연구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통

로를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IRB의 심의로 미국의 구술사 연구자들이 겪었던 사례들은 이러한 염려가 결코 기우로 끝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Linda Shopes에 따르면, IRB는 구술사 인터뷰가 대상자에게 잠재적인 심리적 위해를 미치지 않으리라는 점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로 하여금 인터뷰의 수행 이전에 구체적인 질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사전에 승인된 제한된 질문 이외에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삼갈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또한 민감한 주제가 될 만한 질문을 다룬 경우에는 인터뷰 후 구술자에게 심리치료 상담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정해진 질문만을 기계적으로 주고받으라는 IRB의 요구는, Christian Joon Park(2016)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의 과정과 라포의 형성을 통해서 보다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려는 구술사 연구 방법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미리 제시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실험이나 관찰을 되풀이하는 자연과학적 연구들과는 달리 구술사는 질적 연구의 일종으로 귀납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구문제를 발견하고 풀어나간다. 연구문제는 연구의 과정과 무관하게 선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경험 속에서 구체화된다. 질적 연구의 과정은 상당히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정향진(2016)의 보고에 따르면, IRB의 사전심의는 질적 연구의 이러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학적 디자인"을 연구 개시 이전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만 연구로 인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연구의 자율성의 침해를 넘어서 실제적인 진행 자

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Linda Shopes는 이러한 상황을 「생명윤리법」이 보호하려는 인간연구대상의 권리나 이해관계와 존엄성은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정의된 것으로 인문학적 연구와는 배치되는 것(Christian Joon Park, 2016, p. 137)이라고 진단한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다루는 생명과학에서의 인간 존엄성과 경험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것을 다루는 구술사를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의 차별성을 간과한 데에서 벌어진 참사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연과학의 실험실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려는 관료주의적인 악몽(Shea, 2000)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생명윤리법」이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수집된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문제이다.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자체에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생명윤리법」의 태도와는 달리 구술사는 구술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다른 질적 연구들과도 구별되는 구술사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대개 아카이브스에 기록물로 보존이 되고, 적절한 방침에 따라 공개된다. 구술사에서 구술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익명성 속에 구술자를 꼬옥꼬옥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가 스스로가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거부하고, 이미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료의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 권리를 구술자에게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구술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사실들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가 살아오면서 겪어온 삶과 세상에 대한 고유한 해석이기 때문에 익명성 속으로 구술자를 감춰버리게 될 경우 그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되는 자료는 구술자의 육성과 얼굴을 비롯하여 구술자가 겪어 온 다양한 경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개인정보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생명윤리법」은 연구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3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폐기하고, 후속연구나 자료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IRB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술자료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끝나는 3년마다 IRB의 심의를 받아서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구술사 아카이브즈의 구술자료는 실험이나 실습의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온 부산물이 아니라 연구 결과 그 자체이고, 애초부터 영구보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매 3년마다 IRB의 심의를 받을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행정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생명윤리법」의 잣대를 적용하라는 요구는 온당하지 못하다. 아무래도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과학자의 시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에 천착하는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각 학문별 고유한 특성과 맥락을 소상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술사 연구에서도 구술자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인 지침과 기준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과학의 실험실에서 필요한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더구나 구술사 연구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구 수행을 위한 윤리적인 기준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연구자의 학문적 자율성과 해당 분야의 고유한 방법론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술사 연구에 필요한 윤리적인 기준은 구술사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더불어서 구술자의 인격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술사에서는 구술자의 인격과 권익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구술사 연구와 자료 수집과 활용의 과정에서 구술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4. 구술자 보호를 위한 구술사의 윤리

인간대상연구에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구술사 연구자들과 구술사 수행기관들은 구술사 인터뷰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독자적인 윤리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해왔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술사 연구와 인터뷰에서 구술자의 인격과 권익 보호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들의 흔적은

미국구술사협회(OHA, Oral History Association), 영국구술사학회(Oral History Society), 한국구술사학회 등 각국의 구술사 연구자들이나 수행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술단체의 구술사 수행과 자료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2>(출처: <http://www.oralhistory.org>)는 미국구술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구술사 인터뷰에서 구술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항목이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연방정부의 OHRP가 구술사를 IRB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채록자의 구술자에 대한 의무가 아주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구술면담에 앞서 구술자가 구술면담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 수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술 자료의 공개와 활용에 관련된 권한의 범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자료공개허가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들과 동의 내용의 문서화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아울러 구술면담을 통해서 질 높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술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채록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술자료의 활용은 구술자와 채록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구술자에게 선량한 믿음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호신, 2012, p. 51).

영국의 구술사학회의 경우에도 구술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술사 인터뷰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구술자에게 구술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구술에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표 2〉 미국 구술사협회(Oral History Association)의 구술사 원칙과 모범사례 가운데 「구술사 평가를 위한 지침」 중 구술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항목

1. 구술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술사의 목적과 수행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구술자와 채록자가 함께 기여하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2. 구술자들은 편집, 공개 여부, 저작권, 사진 사용, 저작권 사용료 그리고 디지털 형태의 배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록의 처리와 배포 등 구술사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술자와 채록자 상호간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한다.
3. 구술자에게 자료공개허가서에 서명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기록은 그 활용에 대한 구술자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공개될 수 없다.
4. 채록자는 구술자에게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 출판을 보장한다거나 인터뷰가 대중에게 공개된 후에 그것에 대한 통제에 관한 사항들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5. 면담은 위와 같은 동의가 전제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동의의 내용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6. 채록자는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과 구술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채록자는 사회적·문화적 경험의 다양성과 인종, 성, 계급, 민족성, 연령, 종교, 성적 지향에 대해 섬세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채록자는 구술자가 자신의 스타일과 언어를 갖고, 자신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채록자는 피상적인 부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술자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7. 채록자는 면담이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개인성을 경계하면서 자료가 사용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록자는 구술자가 특정주제에 대한 구술을 거부하거나 면담자료를 비공개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달아 익명으로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채록자는 이 모든 선택사항을 구술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8. 채록자는 가능한 최상의 장비를 활용하여 구술자의 목소리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까지 정확하게 녹취하여야 한다.
9. 새로운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구술자들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보다 폭넓게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10. 구술사와 관련된 기록물과 녹취본은 구술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선량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과 이익 등을 서면의 양식으로 작성한 정보제공서(information sheet)를 작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구술과 기록 제작에 참여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술사 수행의 초심자들은 영국데이터아카이브(The UK Data Archive)가 제시하는 윤리 지침을 참고해서 구술사 인터뷰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데이터아카이브의 윤리 지침은 제보자나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비롯한 비밀 보호의 의무,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서 노출되는 참여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공개되고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http://www.ohs.org.uk>).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구술사학회도 구술사 연구와 자료 활용의 과정에 필요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출범 초기인 2010년에 구술사 연구 윤리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하였고, 2016년에는 「생명윤리법」의 시행과 강화된 「개인정보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표 3〉(출처: <http://www.koha2009.or.kr>)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국구술사학회의 「연구윤리규정」 가운데 구술자의 인격 보호와 구술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들이다. 제4조

〈표 3〉 한국구술사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중 구술자의 인격 보호에 관한 내용

<p>제4조 (구술 채록 작업에 관한 윤리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자는 구술채록의 목적과 해당 구술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li> <li>2. 연구자는 구술채록 전에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li> <li>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li> <li>3) 개인정보 항목 (구술자료 서식에 포함된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 구술영상·음성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li> <li>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li> </ol> </li> <li>3. 연구자는 구술자에게 편집, 접근 제한, 저작권을 비롯한 구술된 내용의 모든 형태의 활용과 처분에 관련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li> <li>4. 연구자는 구술자가 법적 효력을 갖는 공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될 것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구술된 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건부 혹은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li> <li>5. 연구자는 구술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구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li> <li>6. 구술채록은 구술자와 사전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동의는 기록되어야 한다.</li> <li>7.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기록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술채록의 상황을 포함해서 구술채록의 준비과정과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li> </ol> <p>제5조(구술 자료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형태의 구술된 내용은 구술자가 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li> <li>2. 구술된 내용의 녹취문은 가능한 한 구술자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li> <li>3.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원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li> <li>4. 전시회 및 출판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구술 자료를 재현할 때에는 구술사 프로젝트의 지원기관을 밝혀야 한다.</li> <li>5. 구술 자료의 이용자는 구술 자료의 생산자(구술자와 연구자)를 밝혀야 한다.</li> </ol> <p>제10조(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대체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술사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은 본 연구윤리규정으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 대신할 수 있다.</li> </ol>
--

제2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제10조는 「생명윤리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추가된 것으로, 법률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윤리 원칙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술 채록 작업에 관한 윤리원칙은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채록자의 구술자에 대한 고지의 의무이다. 채록자는 구술채록의 목적, 구술채록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개요, 생산되는 자료의 처분과 활용에 따르는 권리의 보유와 처리, 개

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채록자는 구술자가 구술채록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구술에 대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구술채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권리 관계 등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구술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구술채록의 과정에서 구술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고, 인터뷰의 과정에 불편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채록자의 기록의 의무이다. 채록자가 구술채록과 관련하여 기록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구술채록에 구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동의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연구에의 참여에 대한 의사가 반드시 사전 서면동의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구술사학회에서는 사전 서면 동의의 제출이 아니고, 동의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유연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것은 다양한 계층의 인터뷰를 수행해야 하는 구술사 고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구술 채록에는 흔쾌히 동의하고 참여하지만 서면 동의서 작성을 꺼리는 일부 계층에 대한 구술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된 유연한 기준이고, 구술사만의 고유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으로, 채록자는 구술의 과정과 방법,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해서 구술채록이 의미 있는 기록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구술자료의 활용과 보급에 관한 윤리적 원칙에도 구술자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구술된 내용은 구술자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구술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구술채록을 통해서 생산된 기록의 활용과 관련된 통제권이 구술자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둘째는 녹취문에 대한 구술자와 채록자의 공동 검토에 대한 의무이다. 구술사 연구의 주요한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녹취문에 대해서 구술자

와 채록자가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녹취문의 공개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공동으로 지니도록 하고 있다.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구술사 분야에서 제시하는 윤리 원칙 가운데 상당 부분은 「생명윤리법」이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사안들이다. 예컨대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자발적 동의에 따라 연구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구술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들은 「생명윤리법」과 공통된 사항이다. 반대로 「생명윤리법」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조건으로 제시된 것들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구 결과로 생산된 자료에 대한 통제 권한이다. 「생명윤리법」이 제시하는 연구대상자는 단지 연구 수행의 객체에 지나지 않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참여로 발생하게 될 이익과 위협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이후에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권리는 연구대상자에게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구술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생산된 기록의 공개 여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구술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해서 구술자와 채록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에서는 사람을 연구의 대상, 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객체로 바라본다. 이와는 달리 구술사 연구에서 사람은 단지 연구의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파트너이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서로 다른 방법과 기

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5. 대응방안과 제언

지금까지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구술사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혹은 구술자의 인격과 권익 보호에 관한 윤리적인 원칙을 살펴보았다.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는 구술사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영역을 모두 포괄하지만, 그 자체가 생명과학 분야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기계적으로 적용이 될 때에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구술사 연구의 프로세스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인격과 권익의 보호라는 가치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활한 연구 수행을 가로막는 행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술사 수행기관들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구술사 수행기관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구술사 연구가 「생명윤리법」의 적용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구술사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IRB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만 구술사 연구에 대해서 IRB의 심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서둘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구술사협회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미국 구술사협회는 45CFR46의 구술사에 대한 적용을 생명과학의 인간 윤리를 인문학 연구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다. 구술사협회는 구술사는 45CFR46이 정의하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체적인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구술자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아주 오랜 동안 주장해왔다. 마침내 연방 연방입상연구안전국(OHRP)으로부터 구술사연구는 45CFR46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Linda Shopes).

그렇지만 Neuenschwander(2016)에 따르면, 미국의 대학에 소속된 구술사 실무진들은 여전히 IRB의 심의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연방입상연구안전국의 “구술사 연구는 법률이 정의하는 연구(Research)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IRB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IRB들이 여전히 구술사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 관계당국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 IRB는 연방 정부의 구술사에 대한 방침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구술사 연구가 심의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술사 실무자들이 IRB의 심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제 IRB에 대한 구술사에 대한 심의는 각 대학 당국의 행정적인 문제이지 더 이상 법률문제는 아니다(Neuenschwander, 2016, p. 555). 다시 말해서 대학 당국에 대한 행정적인 설득만으로도 충분히 IRB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관계당국에 의해 구술사 연구를 IRB의 심의대상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하는 해석이 가능할 지 알 수는 없다. 더구나 미국의 45CFR46이 그 적용범위를 '일반적인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와 정부의 공적 기금 지원을 받는 연구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법에서는 '연구'에 대한 범위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생명윤리법」의 적용범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연구로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실제로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자체를 개정하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된다. 「생명윤리법」에 '연구'에 관한 정의를 포함해서, 구술사와 같은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를 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은 그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설령 개정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까닭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IRB의 심의에 대한 면제 요건의 개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유력한 대안이다. 현재 IRB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는 대중에게 이미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와 개인식별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몇 가지 경우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구술사를 비롯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의 연구는 자연과학적인 실험이나 정형화된 관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삶의 경험을 가치 지향적으로 수집하고 해석하는 행위이다. 보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도출하는 탐구행위가 아닌 비판과 해석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IRB의 심의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지식의 도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연구 영역 중에서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갖춘 영역은 IRB 심의를 면제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자체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그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4>는 관련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13조 제1항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구술자의 이름이나 신원노출이 불가피한 구술사 연구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나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대통령령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령이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구술사 연구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중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개정안

제13조 ② 인간대상연구 가운데 보편적 지식의 탐구와 관련이 없는 가치 지향적이거나 비판적인 연구이면서,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권익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학문 분야의 자체적인 윤리 지침 적용이 가능한 연구 ③ (현행 제2항의 내용)
---

법률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술사 분야나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사회과학 분야와 연합하여 공동의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현실적으로 IRB 심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의 가치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생명과학 분야의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연구 방법이나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술사나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몇몇 대학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연구에 적용하는 IRB의 심의위원은 생명과학 연구와는 다르게 구성하여 독자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현행 법률의 조건들을 준수하면서,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의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한 심의와 관리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에서 인간대상연구는 IRB의 심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IRB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대원칙에 불과하다. 심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들은 모두 IRB에 일임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들은 기관 자체에 일임하여 연구 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김은애, 2015) 형식을 띄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IRB의 심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어떤 소속기관의 IRB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단체들과 연계하거나 또는 구술사수행기관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IRB를 설립하고, 회원들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독자적인 심의를 진행하면서 『생명윤리법』의 요건을 준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즉, 한국구술사학회나 한국구술사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제3의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생명윤리법』의 요건에 맞추어서 독자적인 IRB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서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6. 닫는 말

구술사는 살아 있는 사람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을 통해서 수집되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구술자 자신의 삶의 경험과 사회,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구술자의 삶 자체이고, 삶에 대한 고유한 해석이다. 구술자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구술사 연구의 과정에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 연구와 자료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사 연구자와 구술사 수행기관들도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에 필요한 윤리적인 기준과 심의는 일견 구술사에서의 이런 필요와 요구와 유사한 목적을 지

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생명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윤리와 인문·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의 윤리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을 단지 연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일방적인 시선인 것과는 달리 구술사 연구에서는 인간은 연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연구를 이끌어 가는 참여와 협력의 주체로 바라본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IRB에 의해서 구술사 연구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맡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구술사 연구의 학문적인 독자성과 자료 수집과 서비스라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IRB에 의한 기계적인 심의와 관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인간대상연구 가운데 보편적인 지식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치 지향적이거나 비판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자

체적인 윤리 기준을 적용하여 IRB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구술사학회나 한국구술사네트워크 등 학계와 구술사 수행기관들이 공동으로 생명과학 분야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IRB를 만들어서 이에 대응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의 원칙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개별 분과 학문에 행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구술사를 비롯한 학문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김시형 등 (2016).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성에 따른 심의: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17(1), 17-33.
- 김은애 (20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면제 근거규정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6(2), 43-73.
- 박윤형, 이열, 이평수 (2012). 최신 생명윤리법.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서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윤택림,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 쓰기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호신 (2012). 구술자료의 인격적인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47-69.
- 이호신 (2017).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93-216.

- 정향진 (2016). 질적연구와 연구윤리심의. 2016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워크숍: 구술자료의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 47-55.
- 조흥석 (201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체계. 한양법학, 25(4), 487-502.
- 최병인 (2014).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의 IRB의 이해.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17.
- 한국구술사학회 (2017). 연구윤리규정. 한국구술사학회. 검색일자: 2017. 7. 15.  
[http://www.koha2009.or.kr/html/sub3\\_05.html](http://www.koha2009.or.kr/html/sub3_05.html)
- 한국연구재단 (2016). 연구윤리 질의응답. 대전: 한국연구재단.
- Christian Joon Park (2016).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7(2), 133-161.
- Hamburger, Philip (2004). The New Censorship: Institutional Review Boards. The Supreme Court Review 2004, 271-354.
- Oral History Association, n.d. "Information about IRBs" Oral History Association.  
<http://www.oralhistory.org/information-about-irbs/>
- Neuenschwander, John A. (2009). A Guide to Oral History and Law. New York: Oxford Press.
- Neuenschwander (2016). 구술사의 법적 영향. 도널드 리치 엮음. 현대 구술사 연구의 현장. (손동유 외 옮김). 서울: 선인. (원전 발행년 2010).
- Shea, Christopher (2000). Don't Talk to the Humans The Crackdown on Social Science Research. Lingua Franca, 10(6), 26-34.
- Shopes, Linda, n.d. Oral History, Human Subjects,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s, Oral History Association. Retrieved July 15, 2017,  
<http://www.oralhistory.org/aboutdo-oral-history/rl-history-and-irb-review>
- Shopes, Linda (2007). Negotiat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AHA Perspectives Online, 45, 3. Retrieved January 19, 2017, from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march-2007/institutional-review-boards>
- Ward, Alan. n.d. Is your oral history legal and ethical? Retrieved July 7, 2017, from  
<http://concernedhistorians.org>

#### [ 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107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50호, 2004.1.29. 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8호, 2016.12.20. 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9호)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enter for Bioethics Policy Research (2010). A study on the revision fo the Bioethics and Safety Law. Seoul: Center for Bioethics Policy Researc.
- Cho, Hong-Suck (2014). The System of Korean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IRB. Han Yang Law Review, 25(4), 487-502.
- Choe, B. I. (2014). Guidance for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Korean Assocation of Child Study, Proceeding for Scholarly Symposium, 7-17.
- Jung, Hyangjin (2016). Qualitative Research and Research Ethic Review. 2016 Korea Oral History Network Workshop: Understanding legal and ethical issues of oral history resource, 47-55.
- Kim, Eun-Ae (2015). Study on the provision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related to the exemption of the research review by IRB. Han Yang Law Review, 26(2), 43-73.
- Kim, Si-hyeong etc (2016). A Review on Character of Social Behavioral Research: Analysis of Humphreys study. Bioethics Journal, 17(1), 17-33.
- Korea Oral History Association (2017). Code of Research Ethic. Korea Oral History Association. Retrieved July 14, 2017. [http://www.koha2009.or.kr/html/sub3\\_05.html](http://www.koha2009.or.kr/html/sub3_05.html)
- Korea Research Foundation (2016). Research ethics question and answer. Daejeon: Korea Research Foundation.
- Lee, Hosin (2012). A Study on the Issues on Moral Rights of Oral History Resour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47-69.
- Lee, Hosin (2017).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1), 193-216.
- Park, Christian Joon (2016). IRB and Oral History Research Ethics: Focusing on the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of Hanminjokdamunhwa. Oral History Research, 7(2), 133-161.
- Park, Yoonhyung, Lee, Eol, & Lee, Pyongsoo (2012). The Newest Bioethic Law.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 Yun, Taekrim & Ham, Hanhee (2006). Oral History methodology for writing new history. Seoul: Arche.